

경관위원회 자문 운영 변경 계획

- 경관위원회 운영 부서에서 경관자문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, 「인천광역시 서구 경관조례」에 적합하게 경관자문 대상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함

1. 추진배경

- 현재 경관자문이 경관위원회 운영체계와 분리되어 건축허가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음. 이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자문 기능을 일원화하여 경관심의·자문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
-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이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등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조정됨. 이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서구 경관조례」에 적합하게 경관자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 필요

2. 관련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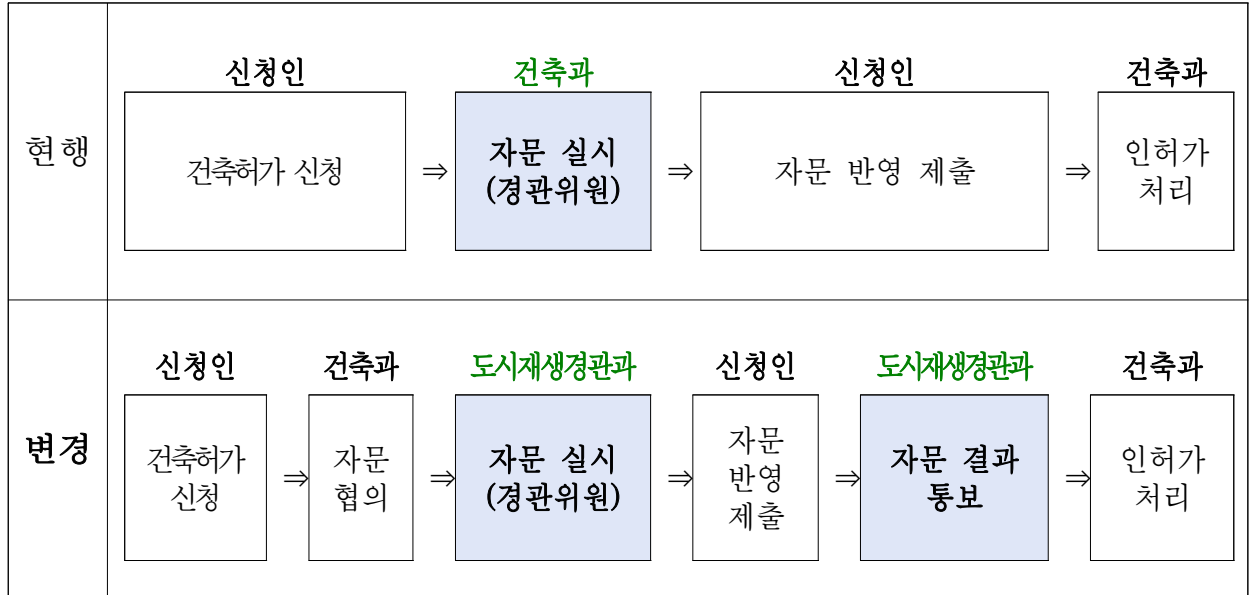
- 「경관법」 제29조(경관위원회의 설치)
- 「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」 제21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 및 제23조(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)
⇒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(안)으로 지정
- 「경관 심의 운영 지침」 제6장(경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

3. 변경사항

- 자문 실시 부서 및 수당 지급 조정

구분	현행	변경	비고
자문 실시	건축허가 부서 (건축과)	경관위원회 운영 부서 (도시재생경관과)	경관업무의 일원화
수당 지급	건축위원회 운영비	경관위원회 운영비	

* 자문 절차도



○ 자문대상 현행화

지역	건축물	운영		비고
		현행	변경	
신도시 조성지역 (검단신도시, 루원 시티, 검단3구역 등)	건축허가 대상 (단독·다세대·연립주택 및 지상 3층 이하 건축물 제외)	자문	좌동	변경 없음 (단, 검단신도시는 2026.7월부터 삭제)
서구 전지역	건축심의 미대상 (높이 50m 이거나 연면적 30,000㎡ 이상)	자문	좌동	변경 없음
	건축심의 대상 (11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5,000㎡ 이상)	자문	삭제	조례 개정으로 경관심의 대상

4. 시행일

- 2026. 5. 1. 이후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함. 끝.